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재주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4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24년 8월 26일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 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권고(의안번호 제2021-222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조례의 위임근거와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용어의 정비를 통해 상위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위임근거 명확화(안 제1조)
  -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함을 명시
-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 “선택적” 복지제도의 용어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정비
- 후생복지사업 명확화(안 제7조)

-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규정 삭제
- 건강검진비, 단체보험비, 예방접종비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위임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권고(의안번호 제2021-222호)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현행 조례 제7조제6호에 따라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규정 삭제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있었다는 점, 대한민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개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사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 2021년부터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의 국내·외 시찰이 없었고 향후에도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본 조의 정비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짐.
- 본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현행 조례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과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정비 역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